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10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복기왕 · 박용갑 · 정준호
이연희 · 이건태 · 문진석
염태영 · 허종식 · 손명수
김문수 · 민병덕 · 최혁진
조계원 · 송재봉 · 김현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자유기구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따라서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삭제, 제16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삭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무인자유통계)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제161조제2항 중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2. 제1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하

여 전단등을 살포한 사람

3.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4.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10의2.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② (생략)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다만, <u>「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u> 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1. · 2. (생략) ④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략)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2. 제1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단등을 살포한 사람

3.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4.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

<삭제>

제166조(과태료)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제161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11. ~ 15.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u>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6. · 7. (생 략) ④ ~ ⑦ (생 략)	<u>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